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84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강석주 의원(1명)

찬 성 자: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성연,
신복자, 윤종복, 이상욱,
이숙자, 이종환,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 · 훈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역할과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효행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경로 중심 표현을 효 중심으로 정비하고 ‘효의 달’ 행사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모 등" 이란 정의 규정 을 신설함 (안 제2조제3호)
- 나.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으로 효행수당을 신설함 (안 제7조)
- 다. 효의 달 행사 지원을 신설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로의”를 “효의”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부모 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효행수당”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효행수당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효의 달 행사 지원 등)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

단체에서 개최하는 효의 달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신설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u></p>
<p>제6조(장수노인 지원) ① 시장은 매년 10월 <u>경로의 달</u>에 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6조(장수노인 지원) ----- ---- <u>효의</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p> <p>① <u>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부모 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효행수당”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효행수당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p>③ <u>그 밖에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u></p>

<신 설>

제7조 · 제8조 (생 략)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효의 달 행사 지원 등)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효의 달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 제10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2조(정의)	×	[재정소요 요인 없음] “부모 등”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제6조(장수노인 지원)	×	[재정소요 요인 없음] “경로의 달”을 “효의 달”로 상위법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제7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	[기술적 추계 곤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세이상 부모 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효행수당)를 지원할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문의 결과 예산 편성 및 지원 대상 ¹⁾ ,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4	제8조 (효의 달 행사 지원 등)	△	[기술적 추계 곤란] 10월 효의 달에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개최 또는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효의 달 관련 행사를 지원할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 편성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세이상 부모 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효행수당)를 지원할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문의 결과 예산 편성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1) 지원 대상자(100세이상 부모 등과 동일 주소지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관련부서(서울시 어르신복지과) 문의 결과 현재 전수 조사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으로 파악됨

- 안 제8조(효의 달 행사 지원 등)에 따라 10월 효의 달에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개최 또는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효의 달 관련 행사를 지원할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 편성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2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